-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 안 번 호 | 제2655호 |
|---|---|

2021. 10. 14.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09. 27. 양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21. 09. 28. 행정재경위원회
다. 상정일자 :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10. 14. 상정 ·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기준,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구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○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, 연 1회 이상 활용실태를 점검하도록 함.(안 제3조의2)
○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된 순서로 하되, 구나 국가, 서울특별시의 체육경기·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경기·행사를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제4항)
○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50퍼센트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, 국군포로(등록포로) 및 그 가족을 신설함.(안 제7조바목부터 차목까지)
○ 체육시설의 위치와 대상시설명 등을 정비함.(안 별표 1, 별표 3, 별표 4)
○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○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기준,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구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음.

나. 검토 내용
○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
-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개방과 공정한 이용 기회를 규정하였고,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음.
-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, 구청장은 구 등의 공공기관의 체육경기나 행사 등을 제외하고 접수된 순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였음.
-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제7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을 개정 및 신설하여 사용료의 50%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음.
- 또한 상위법령의 제명을 적시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, 별표 1에 있는 체육시설의 위치 중 예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가보훈처의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, 활용실태 점검, 사용료 감면 대상자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.

○ 또한,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통일하였으며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의 권고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충족하고 구민 체육시설 활용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고 드림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**5. 토론요지 :** 생 략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6명 만장일치 의결)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** 없 음